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98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서삼석·문대림·임호선

이병진 • 박희승 • 복기왕

정준호 · 정을호 · 이개호

윤준병·문금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경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공무용 선박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 중인 선박의 내용연수가 경과 또는 임박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건조·구입·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3항).

법률 제 호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발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입·건조·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제13조의3(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용
	되는 선박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
	입·건조·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u>할 수 있다.</u>